

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생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
- 나. ‘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’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,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청년월세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'20년~'22년 ※ 3년간 운영성과를 토대로 지속추진 여부 검토
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청년1인 가구(만19세~만39세)
- 지원조건 :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주택 거주 무주택자
 - (지원제외)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, 기초생활수급자,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, 2,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
- 지원내용 : 월 20만 원 지원(최대 10개월, 200만 원) ※ 생애 1회 지원
 - 3년간, 4만 5천 명 지원 ⇨ '20년 5천 명, '21년 20천 명, '22년 20천 명
- 지원방법 : 온라인 신청, 월세 계좌이체 확인 후 지급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년 6개월('20년 7월~'22년 12월)
- 위탁사무 : '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' 운영
 - ① 상담 및 신청접수 : 사업안내, 신청내용 확인 및 오류 보완
 - 신청기간(2주)중 1일 전화문의 1천여 건, 접수 2만여 건 예상
 - ②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
 - ③ 지원대상자 기본 및 급여정보 관리
 - 주소, 임대차계약 변경사항, 유사사업 중복수혜 등 자격여건 확인
 - ④ 통계관리 및 사업평가(모니터링 등), 홍보 지원
 - ⑤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'청년주거정책'과 연계 모색
- 운영인력 : 행정인력 5명 ※ 상담요원 : 신청기간 10여명 한시 운영
- 필요예산 : 100백만 원('20년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다수의 청년대상 사업으로 전화상담, 신청서류 검토, 지원자 관리 등 일부 사무를 전문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민간 기관(단체)에 위탁 운영함으로써
-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 - 잠재적인 정책대상 20만여 명, '20년 신청 예상인원 2만여 명으로 신청민원 폭주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참여자의 편의 도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주거기본법 제15조(주거비 보조) 제3항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4조(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)
 1.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-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(청년주거사업)
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3.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

나. 예산조치 : 예산 전용(시스템구축 집행잔액 등 사용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진계획(시장방침 제208호): '19.10.30.
-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: '20. 2.20.
-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("적정"): '20. 3.24.
-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및 지원 : '20년 7~8월

※ 작성자 :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팀 박경옥(☎ 2133 -7703)